

충청북도지방공사의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(안)

의 안	111
번 호	

제출연월일 : 1999. 7.
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□ 제안이유

- 지방공기업법령의 개정으로 지방공사의 장 후보추천을 위하여 관련조례 세정

□ 주요골자

- 위원회의 구성 :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위원 7인으로 구성

1. 도지사가 추천하는 자 2인
 2. 도 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
 3. 당해 공사의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
 4. 지방공사의 장 임명대상 지방공사의 감사 1인
- 위원의 임기 : 지방공사의 장의 임명이 끝나면 자동 해지
 - 회의 :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
 - 후보의 추천 : 지방공사의 장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지방공기업의 경영에 전문적인 의견과 능력이 있는 자를 지방공사의 장 후보로 추천, 도지사는 추천된 후보가 공사의 경영을 위해 심히 부적당하다고 인정 되는 때에는 재추천 요구 가능

□ 근거법령

- 지방공기업법 제58조제3항, 제4항, 제76조

□ 참고자료

1. 제정조례안 1부.
2. 관련법규 발췌 1부.

※ 입법예고('99. 5. 28 ~ 6. 20)결과 특기사항 없음

충청북도지방공사의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(안)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58조제4항 및 동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지방공사의장후보추천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위원회의 설치) ①도지사는 도에서 운영하는 지방공사의 장(이하 “공사의 장”이라 한다) 임명대상자를 추천받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한다.
②위원회는 비상설 위원회로 운영한다.

제3조(위원회의 구성)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위원 7인으로 구성한다. 단, 공사의 신규설립에 따른 공사의 장 후보추천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외한다.

1. 도지사가 추천하는 자 2인
2.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
3. 당해 공사의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
4. 공사의 장 임명대상 지방공사의 감사 1인

②도지사는 위원회의 구성이 필요한 때에는 해당기관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.

제4조(위원장)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.

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.

제5조(위원의 결격사유)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.

1. 지방공기업법 제60조의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
2. 제3조제1항제4호의 감사를 제외한 공사의 임·직원

제6조(위원의 임기) 위원의 임기는 공사의 장의 임명이 끝나면 자동 해지된다.

제7조(회의) ①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②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.

③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두되, 간사는 지방공기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도의 과장이 된다.

제8조(공사의 장 후보의 추천) ①위원회는 지방공기업의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시견과 능력이 있는 자를 공사의 장 후보로 추천하여야 한다.

②위원회는 공사의 장 후보추천대상자를 의결한 때에는 지체없이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③도지사는 추천된 후보가 제5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거나 공사의 경영을 위해 심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회에 대하여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에 위원회는 지체없이 이를 재심의하여 후보를 추천하여야 한다.

제9조(사무협조) ①위원회는 공사의 장 후보추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 계 법령 발췌

【지방공기업법】

제58조(임원)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장을 임명할 때는 사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.
④ 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제76조(설립·운영)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단(이하 “공단”이라 한다)을 설립할 수 있다.
② 공단의 설립·운영에 관하여는 제46조·제49조 내지 제52조·제53조제1항·제56조 내지 제66조의2·제68조 내지 제74조·제75조의2 및 제75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. 이 경우 “공사”는 “공단”으로, “사장”은 “이사장”으로, “부사장”은 “부이사장”으로, “사채”는 “공단채”로 본다.